

## 경운대학교 고충처리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교직원, 학생들의 고충상담 접수에 관한 처리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고충상담접수에 관한 조사 및 심의
2. 관련 규정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구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
5.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교직원으로부터 고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.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의록 작성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결과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의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간사)** ①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